

부산직할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(감사) 제 1 항중 “본회의의 의결로”를 “소관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”로 하고 “감사를 행한다”를 “감사를 행할 수 있다”로 하며, 동조 제 2 항중 “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”를 “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”로 한다.

제 3 조(조사) 제 2 항중 “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”를 “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”로 하고, 동조 제 3 항중 “조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”를 “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사를 시행할 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확정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 2 조(감사) ① 의회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(이하“구”라고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<u>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, <u>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u></p> <p>③④⑤ (생략)</p>	<p>제 2 조(감사) ① .....  <u>.....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.</u>  <u>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.....</u>  .....  <u>감사를 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.....  ..... <u>상임위원회</u>  <u>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</u>  <u>여 작성하고.....</u></p> <p>③④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3 조(조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<u>목적 조</u>  <u>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</u>  <u>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  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<u>조사특별위원회(이</u>  <u>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</u></p> <p>④⑤⑥⑦ (생략)</p>	<p>제 3 조(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 <u>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.....</u>  .....</p> <p>③ .....  .....  <u>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</u>  <u>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</u>  <u>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확정</u>  <u>한다.</u></p> <p>④⑤⑥⑦ (현행과 같음)</p>